

# 건축개정법령

◎ 건설부령제397호

## 건설업법시행규칙개정령

1986. 2. 24.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설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건설업면허실시공고) ① 영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의 실시를 위한 공고는 그 면허신청서의 접수개시일 30일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각 1 회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의 종류
2. 신청서 접수기간
3. 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의 장소
4.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
5. 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6. 기타 유의사항

제 3 조 (건설업면허신청서 및 첨부서류등) ① 법제 6 조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상임임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상근하는 이사를 말한다)의 개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표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 및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4. 사무실의 보유를 증빙하는 서류(자기소유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표시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5. 건설공사용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6. 건설공사용장비현황(영업용에 제공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다만, 중기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 등본

7.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그 출자금의 예치를 증빙하는 서류

8.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의 명단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③ 제 2 항 각호의 서류는 영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서 제출당시 그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제 4 조 (건설업면허신청서의 심사) ① 건설부장관 또는 영 제 5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설업면허 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인이 법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 또는 이 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확인은 이를 하지 아니한다.

②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첨부서류의 보완)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면허신청서의 첨부서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3. 첨부서류가 영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것이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때

제 6 조 (실제확인)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당해분야기술자·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실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사무실 사용실태
2. 건설공사용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
3. 재무관리상태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7 조 (건설업면허갱신신청서) ① 영 제 1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갱신신청서는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갱신신청서에는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 내지 제 6 호 및 제 8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 4 조 내지 제 6 조의 규정은 건설업면허갱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8 조 (건설업면허등의 공고) 영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 또는 건설업면허갱신의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갱신) 연월일
2. 면허번호 및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또는 명칭과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제 9 조 (건설업면허증등의 교부등) ①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하거나 법 제 6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한 때에는 그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업면허갱신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 3 호 서식의 건설업면허증과 별지 제 4 호 서식의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은 별지 제 5 호 서식의 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 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에 교부하며, 건설업

면허갱신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을 회수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이전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신청서를 건설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을 잃어버리고 그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미 교부받은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은 이를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면허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도급한도액, 도급금액의 하한 또는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인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기타 사항인 때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정정을 받아야 하며, 전문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면허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건설업면허대장)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대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표지)①영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그의 주된 영업소안에 내걸어야 할 표지는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증으로 하고, 주된 영업소외의 영업소안에 내걸어야 할 표지는 별표1에 의한다.

②영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내걸어야 할 표지는 별표2에 의한다.

제12조(건설업자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등)①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건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건설공사착공신고등)①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착공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착공신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착공보고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착공신고서 또는 건축공사착공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착공신고의 통보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건축공사착공통보서에 의하되 매월 그 달에 신고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건설업의 양도인가신청 등)

①영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서류
3. 건설공제조합의 의견서(양도자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 한한다)
4. 건설공사발주자의 동의서(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5. 건설공사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보수의무기간 기타 공사현황)을 기재한 서류

③영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도인가연월일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양도자 및 양수자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제15조(법인의 합병인가신청 등)①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4.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서류

③영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인가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인합병인가연월일
2. 이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합병전 법인과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소재지, 장소 및 대표자의 성명

제16조(건설업의 상속인가신청 등)①영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상속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서류

③영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상속인가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변 경 구 분	첨 부 서 류
영업소소재지의 변경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2. 제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의 보유를 증빙하는 서류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변경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에는 호적초본) 2. 신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본)

야 한다. 이 경우 그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속인가연월일
2. 상속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성명

제17조 (도급한도액 산정)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은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업종별로 이를 산정한다.

② 영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의 평가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③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인의 도급한도액은 양도인의 도급한도액으로 하되, 영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의 도급한도액기준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의 도급한도액이 영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인 경우에는 양수인의 도급한도액은 별표3에 의하여 새로이 정한다.

제18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신고) ① 영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발행하여 발주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17호 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2. 제1호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17호 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와 도급계약서 사본

3. 자기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8호 서식의 자기건설공사실적내역표

4.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관할 대한민국재외공관장이 발행한 별지 제17호 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거래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와 도급계약서 사본

5. 군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납으로 시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군납조합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6.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설기술자등보유현황표

③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20호 내지 별지 제25호 서식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문건설업자로서 영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기준금이 변경된 때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준비금의 적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건설공사실적의 합산)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와 법인인 건설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전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을 합산한다.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한 경우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은 하도급인 또는 재하도급인과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의 공사실적에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 (건설공사도급대장)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도급대장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 (하도급계약통지서) ①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통지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하도급계약통지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제22조 (건설기술개발 등의 권고대상) 영 제38조 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

는 일정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실적이 있는 자”라 함은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당해 공사분야의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10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업자를 말한다.

제23조 (공사실적의 주요공종등) ① 영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수첩에 기재하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은 다음과 같다.

1. 토목공사업 : 도로·교량, 댐·발전소, 항만, 항공, 철도·지하철, 치산치수·농수산토목, 상·하수도, 기타 토목공사분야

2. 건축공사업 : 주거용, 상업용, 광공업용, 공공용, 문교·사회용, 기타 건축공사 분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매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4조 (증표의 서식) 영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다.

제25조 (건설업자실태조사부)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실태조사부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다.

제26조 (하자산정기준) 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발생의 회수는 발주자가 보수를 지시한 하자발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1회의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때에는 이를 1회로 보며, 1회의 하자발생액이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의 하자발생액의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이상에 해당할 때에 이를 1회로 본다.

제27조 (과징금납입고지서)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입고지서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 (면허등의 수수료)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등의 수수료액은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 (보고서식) 영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다음의 서식에 의

한다.

1. 전문건설업자면허현황보고 : 별지 제 30호 서식

2.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신고사항 처리결과보고 : 별지 제31호 서식

제30조 (과태료납입고지서)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입고지서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영 제29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를 할 경우 1986 년도 도급한도액산정을 위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는 제19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하도급받은 공사인 때에는 수급인이 발행하는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 (주된 영업소외의 영업소안에 걸어야 할 표지)  
건설업면허내용  
(제 11조 관련)

면허번호	
면허(갱신)연월일	
상호	
영업의종류	
대표자	

비고 : 이 표의 규격은 사정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다.

[별표 2] (건설공사현장에 내걸어야 할 표지)

건설공사내용  
(제 11조 관련)

공사명	
발주자	
시공사	
공사비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현장관리기술자	
기타	

비고 : 이 표의 규격은 사정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다.

[별표 3]

일반건설업자및특수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평가방법  
(제 17조 제 2 항 관련)

1.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은 산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

다.

$$\text{도급한도액} = \text{공사실적평가액} + \text{경영평가액} + \text{기술개발투자액} + \text{기술개발보상액} \pm \text{상벌액}$$

가. 위의 산식에 의한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위의 산식에 의한 경영평가액은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35에 해당하는 금액에 경영평점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 “나”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text{경영평점} = (\text{유동비율평점} + \text{부채비율평점} + \text{매출액순이익율평점} + \text{자기자본비율평점} + \text{총자본회전율평점}) \div 5$$

(1) 위의 산식에 의한 유동비율평점, 부채비율평점, 매출액순이익율평점, 자기자본비율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매출액순이익율(법인세차감전순이익/매출액),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업체전체평균비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점을 초과할 때에는 각각의 평점을 3으로 하며, 부채비율평점, 매출액순이익율평점 및 자기자본비율평점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각각 그 평점을 “- 1”로 한다.

(2) (1)중 각각의 업체전체평균 비율은 업체(부채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인 업체를 제외한다)의 전체평균비율에서 2배의 표준편차를 초과한 비율의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전체평균비율(매출액순이익율이 마이너스인 업체는 비율산정시 나쁨수에서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경영평점이 2를 초과할 때에는 2로, 0이하일 때에는 0으로 한다.

라. 위의 산식에 의한 기술개발투자액 및 기술개발보상액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 3 항 및 별표 5에 규정

된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의 합계액에 1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 기술개발보상액은 직전 2개 영업년도중 예산회계법령, 지방재정법령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령에 의하여 기술개발보상액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합계액에 1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마. 위의 산식에 의한 상벌액은 직전 영업년도중 예산회계법령, 지방재정법령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령에 의하여 우수시공업자로 지정되거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우수시공업자로 지정된 자의 경우에는 지정된 회수에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연평균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상벌액으로 더한다.

(2)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은 회수와는 관계없이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벌액으로 뺀다.

(3)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자의 경우에는 당해처분을 받은 회수에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연평균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상벌액으로 뺀다.

2. 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 면허를 하는 경우 그 면허를 받는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도급한도액을 산정하거나 건설공사실적신고보완기간 이후에 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를 받은 경우 그 건설업을 양수한 자의 다음 연도 도급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 1 호 “다”의 경영평점을 1로 한다.

3. 일반건설면허 또는 특수건설면허를 2이상 소지한 건설업자의 각 면허별 도급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 1 호의 산식중 다음의 사항은 이를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가. 제 1 호 “다”의 경영평점

나. 제 1 호 “라”의 기술개발투자액 및 기술개발보상액

다. 제 1 호 “마”의 상벌액

[별표 4]

면허수수료액

(제 28조 제 1 항 관련)

신 청 내 용	수수료
1. 건설업면허 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나. 토목건축공사업, 특수건설업 다. 전문건설업	4만원 6만원 1만원
2. 건설업면허갱신 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나. 토목건축공사업, 특수건설업 다. 전문건설업	3만원 5만원 7천원
3. 건설업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재교부	1천원

(별지 제 1호~제30호서식: 생략)

◎ 내무부령제439호  
**산림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6. 2. 21

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9 조의 제목 “(영림기술자의 배치)”를 “(영림기술자자격증의 발급)”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산림청장은”을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며, 동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 5 호의 2 서식의 자격증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발급상황을 별지 제 5 호의 3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제목 “(사업의무 및 사업신고)”를 “(별채를 수반하는 사업의 신고)”로 하고, 동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별채를 수반하는 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6 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착수 20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11 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별채에 있어서는 첨부서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사업구역실측도(6천분의 1 임야도) 1부
2. 재적조서 1부

제 10 조 제 2 항중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중 임목별채 사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을 “제 1 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 10 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 1 항의 신고내용이 시행령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신고필증교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현지확인을 하여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별지 제 7 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 1 항 각호의 사업구역실측도 및 재적조서의 작성, 제 2 항의 별채구역 및 별채대상 임목에 대한 표지설치와 제 4 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극인찍기를 산림조합이 행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 10 조 제 4 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에 있어서 사업기준 및 제 2 항의 표지설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별표 2 의 극인을 찍어야 한다.

제 10 조 제 4 항 제 1 호중 “근부에”를 “뿌리부근에”로 하고, 동항 제 2 호중 “근부에”를 “뿌리부근에”로, “평균 흉고직경”을 “가슴높이의 평균지름”으로 하며, 동항 제 3 호중 “근부에”를 “뿌리부근에”로, “흉고부”를 “가슴높이 부분”으로 한다.

제 10 조 제 5 항 내지 제 7 항을 각각 제 10 조 제 6 항 내지 제 8 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 4 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극인찍기를 산림조합이 행하는 경우 산림조합이 사용하는 극인의 제작·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산림조합중양회장이 정한다.

제 10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0 조의 2 (별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신고) 법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별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6 호 서식의 신고서에 사업구역 실측도(6천분의 1 임야도) 1부를 첨부하여 사업착수 20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제 5 호중 다목을 삭제하여 동호를 제 7 호로 하고, 동호에 제 5 호 및 제 6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진

축 및 농기구등의 수선재료로 이용하기 위한 연간 2제곱미터이내의 별채

6. 임도 또는 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채

제 19 조 제 2 항중 “1월내에”를 “15일 이내”로 한다.

제 34 조 제 5 항중 “그 예치금에 이식을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를 “그 예치금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저축예금금리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 6 항을 제 7 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 6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조림의무자가 조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장·군수는 제 4 항의 예치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의 보험금을 법 제 41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조림대행비용으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림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 사용등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 78 조의 3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 48 조의 2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9 조에 제 6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행령 제 4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중·묘 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는 각각 5천원으로 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40 조의 2 제 7 호를 삭제한다.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를 삭제한다.

제 73 조 제 1 호 다목을 삭제하고, 동조 제 2 호 가목중 “다목의”를 “나목의”로 한다.

제 75 조 제 4 항중 “예금증서” 다음에,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추가하고, 동조 제 5 항을 제 6 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 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훼손된 산림의 복구이행 또는 불이행에 따르는 복구예치금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 34 조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7 조 제 2 항 제 3 호를 삭제한다.

제 88 조 제 1 항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훼손임지 및 별채구역실측도(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 1부

제91조 제 2 항 제 2 호를 삭제한다.

제92조 제 1 항중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을 “복구비의 예치 및 처리등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94조 제 2 항중 “수실(산림용종자를 제외한다). 버섯 또는 만경류(갈근을 제외한다)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나무열매(산림용종을 제외한다). 버섯 또는 덩굴류(취뿌리를 제외한다)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와 육림을 목적으로 하는 시비·풀베기·가지치기·어린나무 가꾸기 또는 덩굴류제거에 한한다”로 한다.

제95조 제 1 항 제 5 호를 삭제한다.

제98조 제 1 항중 “영림소장”을 “영림서관리소장”으로 한다.

제100조 제 1 항중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행령 제9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문화재관리국 지구사무소장”을 “문화재관리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 2 항을 삭제한다.

제103조의 제목 “(입화허가)”를 “(화기 및 인화물질의 소지등 허가)”로 하고, 동조 제 2 항중 “신청서에 위치도를 첨부하여”를 “신청서를”로 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 (재해에 대한 보상등) ① 법 제114조 및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묘사업에 대한 재해의 보상을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8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원의 관리·운영이 산림조합 중앙회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제 1 항 단서의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제 1 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제 1 항 단서의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하고 보상금지급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111조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재해보상의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기준, 재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 5 호서식]중 “산림청장”을“서울특별시·직할시장·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 5 호의 2 서식] 및 [별지 제 5 호의 3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 6 호서식]의 처리기간중 “15일”을 “7일”로 한다.

[별지 제 17 호서식]의 처리기간중 “40일”을 “25일”로 한다.

[별지 제 33 호서식]의 수수료란중 “없음”을 “5,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 40 호서식]의 처리기간중 “10일”을 “5일”로 한다.

[별지 제 47 호서식]의 처리기간중 “20일”을 “15일”로 한다.

[별지 제 48 호서식]의 승낙(허가) 조건란 제 2 조중 “일변 7건의 연료체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를 “국세 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별지 제 51 호서식]의 처리기간중 “15일”을 “7일”로 하고, 첨부서류란중 ① 항을 삭제하고, ② 항을 ① 항으로, ③ 항을 ② 항으로, ④ 항을 ③ 항으로 한다.

[별지 제 61 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③ 항을 삭제하고, ④ 항을 ③ 항으로 한다.

[별지 제 65 호서식]의 계약조항란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을”은 계약당시의 연차별 조립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갑”이 정하는 기간내에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 67 호서식]의 처리기간중 “15일”을 “7일”로 한다.

[별지 제 68 호의 2 서식]의 처리기간중 “7일”을 “5일”로 한다.

[별지 제 69 호서식]의 처리기간중 입목벌채란 “7일”을 “5일”로 하고, “⑩ 작업방법”란 다음에 “⑪ 훼손목적”란을 추가하며, 첨부서류란중 입목벌채의 경우 ③ 항을 삭제하고, 산림훼손의 경우 ② 항을 삭제하며, ③ 항을 ② 항으로 한다.

[별지 제 69 호의 2 서식]의 구비서류란중 ① 항을 삭제하고, ② 항을 ① 항으로, ③ 항을 ② 항으로 한다.

[별지 제 70 호서식]의 “⑩ 작업방법”란 다음에 “⑪ 훼손목적”란을 추가한다.

[별지 제 71 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②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훼손입지 및 벌채구역실측도(6,000분의 1 또는 3,000분의 1) 1부

[별지 제 73 호서식]의 처리기간중 “7일”을 “5일”로 한다.

[별지 제 74 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⑥ 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 79 호서식]중 “제100조 제 1 항”을 “제100조”로 한다.

[별지 제 82 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① 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2 제 7 호의 개정규정은 시행령 제111조 제 1 항의 2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의 재원이 예산에 계상되는 회계연도의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력자원부고시제86-7호

## 에너지관리진단및진단비용기준

1986. 3. 4.

제 1 조 (목적)이 기준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 9 조의 4 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리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 기준 및 에너지 관리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 이 진단을 받는 자로부터 진단의 대가로 받는 비용(이하 “진단비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단기관이 진단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진단판단기준) 진단기관이 진단을 실시하였을때 에너지관리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 제11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해 동력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에너지관리기준에 의한다.

제 3 조 (계측기준) 설비의 에너지 효율계측과 열정산 기준은 한국공업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로 사용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른다.

제 4 조 (진단비용) 진단비용의 산출기준은 정부의 기술용역육성법 제14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기술용역대가기준중 실비정액 산방식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며 그 내역은 별표 1에 의하여 작성하고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비용의 일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가. 직접인건비

정부의 기술용역 노임단가 기준중 산업설비용역업중 산업공장 부문을 적용하며 반장은 중급 기술자, 반원은 초급 기술자의 일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직접경비

1) 여비: 정부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되되 반장은 여비지급 구분표의 제 3호, 반원은 제 4호를 적용한다.

2) 수용비: 진단에 필요한 보고서 인쇄비로서 조달청이 책정에 단가기준에 따른다.

다. 제경비

직접비(직접 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간접비용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로 계산한다.

라. 기술료

진단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용에 대

한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의 20% 비율로 책정한다.

제 5조 (진단비용의 산출지점)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비용 산출지점은 진단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6조 (진단의 계약) 진단기관의 진단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진단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진단시청 업체에게 서면 혹은 구두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제 7조 (진단기간의 조정) 진단기간은 계약서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또는 단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8조 (진단반편성) 진단반은 반장 1명과 반원으로 구성되되 진단의 규모 및 기간과 기술적 수준등을 고려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하여 편성한다.

제 9조 (진단기관의 책무) 진단기관은 진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가. 진단 대상 설비 또는 업체의 생산에 지장 또는 피해가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

나. 정확한 예측과 객관적인 분석평가로 진단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다. 진단 수행과정에서 지득 또는 입수된 기술정보와 자료 일체는 진단 목적 외에 사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라. 개선대책을 제시할 때 특정회사, 특정제품만을 사용토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 10조 (진단보고서 등) (1) 진단기관은 진단실시후 진단업체에게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진단보고서에는 에너지사용 및 관리현황, 진단내용, 에너지손실요인 및 개선대책, 경제성분석, 관련자료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진단기관은 진단실시후 피진단업체 임원 및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단사항 전반에 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 11조 (보고) 진단기관은 진단 (현장 진단 및 보고서 작성) 실시후 15일 이내에 진단보고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조 (기준해석)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행에 따르며 기타 이의가 있는 사항은 동력자원부 장관의 조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이전에 행한 사무처리는 이 기준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2]

진 단 반 편 성

가. 산업체

진 단 등 급	연 간 에 너 지 사 용 규 모		진단규모	반장요원	비 고
	연 료(TOE)	전 력(MWH)			
1	10,000이상	40,000이상	4×(14+14)	중급기술자 1명	
2	5,000이상~10,000미만	20,000이상~40,000미만	4×(10+10)	중급기술자 1명	
3	1,500이상~ 5,000미만	6,000이상~20,000미만	3×(7+7)	중급기술자 1명	
4	250이상~1,500미만	1,000이상~ 6,000미만	3×(4+4)	중급기술자 1명	
5	250미만	1,000미만	2×(3+3)	중급기술자 1명	

주: 진단규모중 A×(B+C)는 A:요원수, B:현장진단기간, C:보고서작성 기간임.

나. 건 물

진 단 등 급	연 간 에 너 지 사 용 규 모		진단규모	반장요원	비고
	연 료(TOE)	전 력(MWH)			
1	10,000이상	40,000이상	3×(10+5)	중급기술자 1명	
2	5,000이상~10,000미만	20,000이상~40,000미만	3×(8+4)	중급기술자 1명	
3	1,500이상~ 5,000미만	6,000이상~20,000미만	3×(6+3)	중급기술자 1명	
4	250이상~ 1,500미만	1,000이상~ 6,000미만	3×(4+2)	중급기술자 1명	
5	250미만	1,000미만	2×(3+1)	중급기술자 1명	

주: 진단규모중 A×(B+C)는 A:요원수 B:현장진단기간, C:보고서작성 기간임.

◎ 과학기술처공고제86-65호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중개정

1986. 2. 28.

(별표3) 기술용역노임단가기준 (1일8시간기준)

구 분	산업설비용역업		종합건설기술 용역업, 전문 기술용역업 인기기술용역업
	원지력산업	산업공장및 종합환경부문	
특급기술자	65,030	61,430	61,010
고급기술자	50,280	47,220	46,680
중급기술자	36,610	34,370	34,050
초급기술자	24,080	22,920	22,700
고급기능사	28,430	26,940	26,740
중급기능사	15,070	14,430	14,210
초급기능사	10,710	10,390	10,290